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0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김태흠 생일종 서일준

구자근 · 김도읍 · 주호영

홍문표 • 이주화 • 정희용

한무경 • 윤두현 • 김용판

권성동·최승재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 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생 략)	면)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
	<u>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